

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

신청인	성명						사 진 (3.5cm × 4.5cm)		
	생년월일								
	면허종류								
※ 신체검사 개별 검사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은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를 따른다.									
신장	체중	BMI	혈압(안정시, mmHg)		맥박(안정시)		알레르기		
cm	kg		수축기	이완기	회/분	[] 규칙 [] 불규칙			
시력		소변 검사							
구분	나안 (맨눈)	교정	요pH	요당	요단백	요잠혈	기타		
원거리	좌		색각 - (신규대상만 해당, 면허갱신시 비해당)				[] 통과(정상 색각) [] 미통과(색맹)		
	우		시야				[] 통과 [] 미통과		
근거리	좌		청력				[] 통과 [] 미통과		
	우		심전도(EKG)	[] 정상 EKG [] 비정상 EKG ()					
검사항목			적합	부적합	기타	검사항목	적합	부적합	기타
가. 심혈관계						아. 악성종양(암)			
나. 호흡기계						자. 비뇨생식기계			
다. 위장관계						차. 피부/임파			
라. 내분비계						카. 눈			
마. 근골격계						타. 정신/심리			
바. 신경계						파. 청력			
사. 조혈계(혈액)						하. 약물			
주석: 검사소견 중 비정상 소견에 대해 상세 기술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검사자(면허번호/담당의사)					(서명 또는 인)				
판정 결과			판정 사유, 조건부적합 조건 등(필요시 소견서 별첨)						
[] 적합		[] 조건부적합							
[] 판단보류		[] 부적합							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〇〇병원(의원) 장 직인